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6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◎◎◎, ♤♤♤, ◆◆◆, ◈◈◈, ♡♡♡, ▲▲▲, ▣▣▣, ♧♧♧, ▣▣▣, ㈜◐◐◐◐◐◐◐, (의)◇◇◇◇◇◇, ㈜▽▽▽▽, ㈜♠♠♠♠♠, ▶▶▶, ▥▥▥

2. 조치내용

□ **(고발)** ◎◎◎ 등 15인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

○ **(○○○○㈜)** ◎◎◎ 등 9인은 공모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등으로, ’23.9.1. ~’25.9.22. 기간 중 ○○○○㈜ 종목에 대해 총 65,16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

○ **(㈜◈◈)** ◎◎◎ 등 6인은 공모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등으로, ’25.1.2. ~9.22. 기간 중 ㈜◈◈ 종목에 대해 총 1,573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
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

○ ◎◎◎ 등 3인은 공모하여 보유중이던 ○○○○㈜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이용하여 ’24.12.12.~30.

기간 중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, 위계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◎◎◎ 등 10인은 '24.2.13.~'25.9.22. 기간 중 ○○○○㈜ 주식 등을 5% 이상 공동 보유하면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, 이를 미보고(총 14회)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○ ◎◎◎는 '25.8.22.~9.22. 기간 중 ○○○○㈜ 주식의 1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에 해당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, 이를 미보고(총4회)

나. 근거법규

□ (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, 제443조 제1항 제4·5호

□ (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, 제443조 제1항 제8호

□ 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·3·4항, 제445조 제20호

□ (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